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

공보담당 차장검사 박규형

전화 031-739-4324 / 팩스 031-739-4739

## 보도자료

2024. 3. 7.(목)

### 제 목

# 근로자 738명 임금·퇴직금 398억 원 체불한 A그룹 회장 직접 구속기소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·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●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허훈)는 A그룹 소속 근로자 총 73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398억 원을 체불하고,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A그룹 회장 ㄱ○○를 오늘(3. 7.) 직접 구속기소하고, 이에 가담한 계열사 전·현직 대표이사 ㄴ○○, ㄷ○○, ㄹ○○, A그룹 비서실장 ㅁ○○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였음

※ 계열사 대표이사 ㄷ○○은 '23. 10. 16.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임

●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ㄱ○○ 회장이 ①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하여 온 사실, ②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킨 사실, ③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불과 30분 전에 회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사실, ④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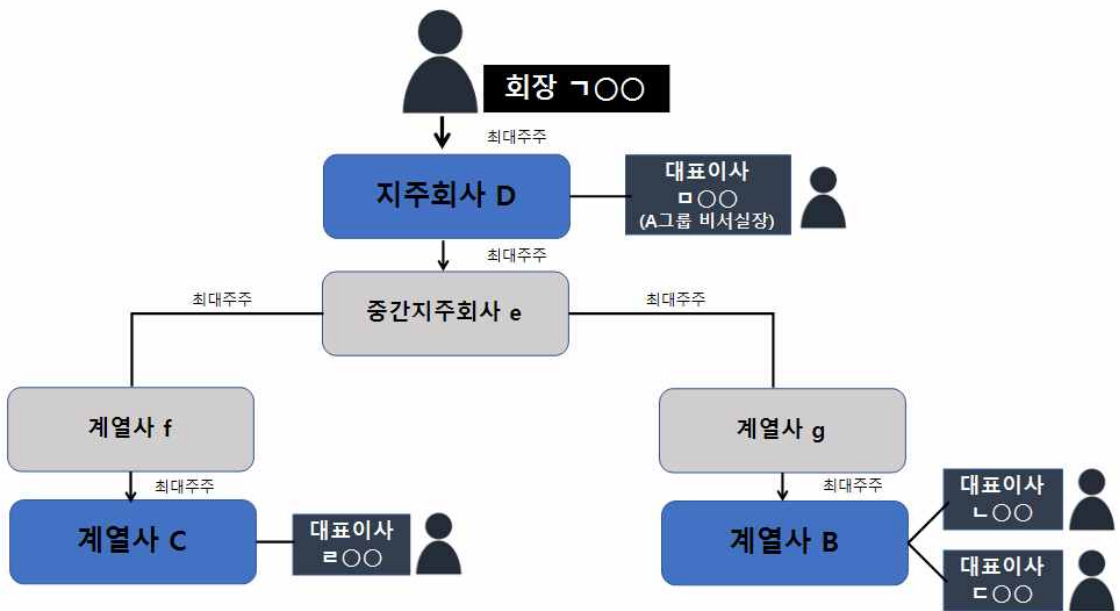
● 앞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,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,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

# 1 사건관계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 1 피고인

순번	피고인	지위(범행당시)	죄명	처분
1	ㄱ○○(69세)	A그룹 회장	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(횡령),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	구속 기소 (24. 3. 7.)
2	ㄴ○○(63세) ※ '23. 7. 10. 및 8. 30. 불구속 기소	계열사B 前 대표이사	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	불구속 기소 (24. 3. 7.)
3	ㄷ○○(50세) ※ '23. 10. 16. 구속 기소	계열사B 대표이사	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	
4	ㄹ○○(61세)	계열사C 대표이사	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(횡령),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	
5	ㅁ○○(57세)	A그룹 비서실장, 지주회사D 대표이사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(횡령),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	

##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A그룹 주요 지배구조



### 3] 공소사실 요지

근로자들 총 738명 함께 약 398억 원의 임금 등 체불

○ A그룹 회장 ㄱ○○는, 그룹 비서실을 통하여 계열사 B·C 등에 대한 자금운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, 계열사 B·C 등 임직원들로부터 정기적인 회의나 티미팅 또는 수시로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계열사 B·C를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하는 사용자로서,

#### ① 계열사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

- 前 대표이사 ㄴ○○과 공모하여, '20. 10. ~'22. 5. 총 24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약 11억 7,000만 원 미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
※ 이와 관련해 ㄴ○○은 '23. 7. 10. 및 '23. 8. 30. 각 불구속 기소

- 대표이사 ㄷ○○과 공모하여, '22. 5. ~'23. 9. 총 397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약 173억 원 및 임금 등 약 133억 5,000만 원, 합계 약 306억 5,000만 원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
※ 이와 관련해 ㄷ○○은 '23. 10. 16. 구속 기소

#### ② 계열사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

- 대표이사 ㄹ○○와 공모하여, '23. 2. ~'23. 12. 총 317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약 6억 9,000만 원 및 임금 등 약 73억 원, 합계 약 79억 9,000만 원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
계열사C 회생절차 신청 직전 계열사C 자금 10억 원 횡령, 사기회생

○ A그룹 회장 ㄱ○○, 계열사C 대표이사 ㄹ○○, A그룹 비서실장 ㄱ○○는 '23. 10. 4. 피해자 회사 계열사C가 채무초과 상태이고 현금 시재가 약 22억 원에 불과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로 계획하였으나, 그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회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므로, 그 이전에 ㄱ○○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,

- '23. 10. 4. 희생절차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에 필요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ㄱ〇〇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, 이로 인하여 임금채권자 등을 비롯한 희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 채무자희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

## 2 수사 경과

- '23. 9. 27. 노동청, 계열사B 대표이사 ㄷ〇〇 구속 송치
- '23. 10. 16. 검찰, 계열사B 대표이사 ㄷ〇〇 구속 기소

※ '22. 10. 대검,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 마련·시행

※ 대검은 △'23. 9. 5. 「2023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협조 요청」 고용노동부 공문, △'23. 9. 14. 악의적·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각 전파

- '23. 12. 7. 검찰, 계열사 B·C 사무실 등 압수수색

※ 대검은 '24. 1. 15. 전국 검찰청에 ▲사업주 재산관계 조사 강화, ▲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적극활용, ▲상습·악의적 체불사업주 정식기소, ▲체불사건 형사조정팀 설치·운영, ▲야간·휴일·출장 형사조정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**설 명절 대비 악의적·상습적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 지시**」 공문을 시행

- '24. 2. 15. 검찰, A그룹 회장 ㄱ〇〇 구속영장 청구

(2. 19. 영장 발부)

- '24. 3. 7. A그룹 회장 ㄱ〇〇 구속 기소 / 계열사B 前대표이사 ㄴ〇〇, 계열사B 대표이사 ㄷ〇〇, 계열사C 대표이사 ㄹ〇〇, A그룹 비서실장 ㄹ〇〇 불구속 기소

### 총 738명, 합계 약 398억 원의 대규모 임금 등 체불 사실 확인

- '20. 10.경부터 '23. 12.경까지 계열사 B·C 소속 총 738명의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약 398억 원을 미지급하는 등, 전례가 없는 대규모 임금 체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함
- 피해 근로자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오랜기간 동안 생활고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

### 계열사들을 직접 경영한 그룹 회장이 임금체불의 주범임을 확인

- 회장 직속으로 일명 '비서실'을 통해 직접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·집행, 임직원 채용, 대표이사 선임 등을 결정하고, 임금 지급 및 체불 상황까지 수시로 보고받았음
- 특히, 디자인, 제품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실무담당자로부터 일명 "TOP(회장 100 지칭) 보고" 문건으로 주기적 보고를 받으면서 제품 관련 개발사항을 결정하고, 제품 디자인 수정까지 직접 결정하였음
- 결국, 회장 100은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정기적인 회의나 티미팅 또는 수시로 인사, 노무, 재무, 공장 이전, 생산량, 매출 계획, 해외법인 설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,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임금체불 범행의 최종 책임자임을 확인

### 고의적, 악의적 임금체불 사실 확인

- 임금체불 중임에도 회장 100은 지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켰음

- '22. 8.~10. 계열사C 등의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 공간(회장실, 전용 집무실, 휴식 공간, 실내정원) 인테리어 공사비 약 18억 원 지출
  - '20. 7.~'22. 5.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, 별장 신축 등에 약 105억 원 지출
  - '21. 12. 계열사B·C의 자금으로 ◇◇유업 인수 증거금 320억 원 지급
-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,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

### 피해 회복보다 개인 재산 보호에 치중한 사실 확인

-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, 회장 100은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약 499억 원의 임금,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 왔음
- '23. 10. 4. 계열사C 회생 신청 30분 전, 회사 자금 10억 원을 회장 100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
- '23. 11. 10. 그룹 소유의 M골프장 매각대금 중 225억 원을 조합원인 지주회사D가 지급받자, 지주회사D에 채권이 있던 회장 100이 당일 110억 원을 송금받아 은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

## 4

### 향후 계획

- A그룹 회장 100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, 추가 임금체불 혐의 등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중임
- 앞으로도, 성남지청은 대검찰청의 「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」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,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,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☐